"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5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19일(음력 9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금산사 압수수색 조계종 "깊은 유감"

11월 7일, 금산사·은적사서 진행
조계종·본사주지협·금산사 논평
조계종, 자체 조사·징계 진행 중
"강압 집행 참담…공정 수사 당부"
진실 규명·자정 제도 보완 약속

김내영 기자·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산사와 은적사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계종은 11월 7일 대변인 묘장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올해 7월부터 해당 의혹을 조사해 현재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전통사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들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압수수색이라는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함과 동시에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압수수색이라는 수단이 동원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갖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이하 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법적 논쟁과 언론에 올라 국민과 불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안타깝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지금까지 해당 사찰들은 당국의 수사 등에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 영역에 과도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법적 조치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잃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두 사찰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민의 신앙적 토대이자, 17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고"임을 강조하며 법 집행에만 천착해 이러한 가치를 간과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성역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등 철저히 자기방어적인 자세와 상투적인 몰염치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신문화 기반까지 허물어 버린다면 자칫 법 집행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종교탄압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은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행정당국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금산사 승가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승가회는 "금산사와 은적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경찰이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며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은 "사전 조사나 통보 없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불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영산회상 法音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열린 이번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은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비롯한 법회 참석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종사이운 의식. 사진=정현선 작가 현장기사 8·9면

종조 선양·韓中교류…태고종 광폭 행보

광화문서 영산재 · 수계법회
태고 보우 국사 탄신다례재
中불교와 '종조 법맥' 조명
상진 스님, 대외 행보 이어가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부터 영산재·국제수계법회를 통한 대중 소통, 한중불교 교류까지 태고종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이후 변화된 종단 위상과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된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에는 1만여 태고종도와 시민이 동참해 십선계를 수지하고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 정신을 선양하고 이어받아 종도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태고종은 11월 10일 북한산 태고사 대웅보전과 부도탑 앞에서 '태고종조 태고보우 원증 국사 탄신 제724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추도사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의 법맥을 잇는 이 법석은 우리 종단이 전통과 수행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종조의 정신을 기려 수행과 포교의 본분을 바로 세워 대중에게 신뢰받는 종단, 사회에 울림을 주는 불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불교 교류사를 조명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태고종은 지난해에 이어 후저우시불교협회와 함께 11월 12일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두 선지식의 전법 교류의 면면을 살펴봤다. 특히 올해에는 태고 보우 국사와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과 다맥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륭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대표단은 11월 11일 서울 백련사에서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운경 스님은 "후저우시불교협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임제종 법맥을 나눈 형제들로서 앞으로도 세미나 뿐 아니라 문화·예술·음악 등 전반에 걸쳐 불교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륭 스님은 "태고종의 가장 큰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친견하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큰스님들의 법통과 법력으로 세상의 화합과 평화가 빨리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답사했다.

상진 스님의 활발한 대외 행보도 역시 태고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11월 19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의 초청으로 법상에 올해 군장병을 위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이날 법석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부임을 기념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을 강조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진 스님은 11월 11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례, 의식의 의의'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지구사랑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사와 한마음선원은 2027년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지구사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생활 속에서 꽃 피우는 자비 실천 - EM사용하기
격월 1회,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지구 환경 살림 방법을 소개하고, 동참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환경지킴이 상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대불교신문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자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